##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02

발의연월일: 2025. 2. 12.

발 의 자:진종오·김태호·서천호

박정하・백종헌・서명옥

곽규택 · 최보윤 · 박상웅

박충권 · 김예지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가 없이 착륙대 등이 설치된 지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공항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의 환경 조성이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금지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와 같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여도 처벌할 수 없게 되거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할 수 없어 현행 벌칙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적이 있음.

이에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의 환경 조성이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도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 거나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 항공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등).

#### 법률 제 호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4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형의 가중) ① 제65조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65조 각 호의 죄를 범하여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인 이상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제65조(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불법 사용 등의 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56조제1항부터 <u>제4항</u> 까지	4 <u>제5항</u>		
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65조의2(형의 가중) ① 제65조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		
	<u>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u>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65조 각 호의 죄를 범하		
	여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인 이상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